

한국환경법학회 회칙

제 정 1977. 12. 7.
전문개정 2003. 6. 28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학회는 한국환경법학회(이하 "학회"라 한다)라 칭하고, 영문 명칭은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(약칭: KELA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학회는 환경법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·연구·발표 및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4조(사업)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1. 환경법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및 조사
2.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
3.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
4. 관계기관에의 자문 및 건의
5.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내외 여러 단체와의 제휴
6.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회 원

제5조(회원) ①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, 정회원, 준회원, 단체회원으로 나눈다.

② 정회원은 다음의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.

1. 대학(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동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)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

2. 박사학위 소지자

3. 국회의원, 판사, 검사, 변호사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

4.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

5. 환경관련단체의 임원

③ 준회원은 다음의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.

1. 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환경법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

2. 사법연수원생

3. 7급 이상의 공무원 및 기타 환경관련단체의 직원

④ 제3항의 준회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정회원이 된다.

⑤ 단체회원은 국내외의 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된다.

제6조(권리와 의무) 회원은 학회의 제반 업무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으며,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·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7조(퇴회 및 자격정지)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학회의 규칙위반 및 의무태만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 또는 자격정지시킬 수 있다.

제3장 임 원

제8조(임원)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

1. 회장 : 1인

2. 부회장 : 약간

3. 상임이사 : 40인 내외

4. 이사 : 80인 내외

5. 고문 : 약간인

6. 명예회장 : 약간인

제9조(임원의 선출) ①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.

② 부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.

③ 상임이사 및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.

④ 고문은 역대회장 또는 정년퇴임한 회원으로서 학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.

⑤ 명예회장은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.

⑥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총무이사, 학술이사, 출판이사, 국제이사, 기획이사, 섭외이사, 홍보이사 및 재무이사를 각 1인 또는 2인으로 위촉한다.

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총무이사, 학술이사, 출판이사, 국제이사 및 기획이사의 보직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선임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총무이사는 서무를, 학술이사는 학술연구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무를, 출판이사는 출판사무를, 국제이사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를, 기획이사는 제반 활동에 관한 기획사무를, 섭외이사는 섭외활동에 관한 사무를, 홍보이사는 홍보에 관한 사무를, 재무이사는 수입·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무를 각각 관장한다.

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하며,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관계 임원에 대하여 요구하거나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.

1. 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
2. 제1호의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

3.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
4.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

제12조(간사) ① 학회에 간사 약간인을 두며,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.

② 간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13조(직원) ① 학회에 직원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,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.

② 직원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.

제4장 회의

제14조(회의) 학회의 회의는 총회·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한다.

제15조(총회의 구성) ① 총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써 구성한다.

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
제16조(총회의 권한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정관의 개정
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3.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
4. 회원 5인 이상이 제의하는 사항
5. 이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
6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17조(총회의 소집)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50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·장소를 명시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.

제18조(총회의 의결방법)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하며,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.

제19조(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구성) ① 이사회는 회장·부회장·상임이사·이사로 구성하고,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

② 상임이사회는 회장·부회장·상임이사로 구성하고,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

③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20조(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권한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·결정한다.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업무를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.

1.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계획과 각종 위원의 선임
2. 학회의 예산·결산 및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에 관한 사항
3. 정관 기타 회칙의 개정안
4. 법령 및 이 정관에 의하여 법정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
5.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제21조(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 회장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·장소를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.
- ③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.
- ④ 회장·상임이사·이사가 학회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사에 참여하지 못한다.

제5장 자산, 재정 및 회계

- 제22조(재산) ①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.

1. 출연금품
2.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
3. 기금
4.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
5. 기부금 및 찬조금
6. 사업에 따른 수입금
7.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
8. 기타 수입

② 제1항 제1호와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금품의 접수에 관하여는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.

③ 제1항 제2호에 정한 입회비 및 회비의 수액은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.

- 제23조(재산의 관리) 학회 재산의 보존 기타 관리는 회장이 이를 관장한다.

- 제24조(회계원칙) ① 학회의 회계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업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②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한다.

- 제25조(재산의 평가) 학회의 모든 재산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
제6장 학술지 편집위원회

제26조(학술지 편집위원회) ① 학회의 학술지 편집·간행을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(이하 “편집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 심사 및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한다.

제27조(학술지 편집·간행) ① 학술지는 연 2회 이상 발간을 원칙으로 하되, 1회는 매년 9월에 정기적으로 발간한다.

② 학술지의 게재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
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사업 및 학술지의 편집·간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제7장 보 칙

제28조(회칙개정) 이 회칙은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
(역대 부칙 - 생략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200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회칙의 시행당시의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.